|  |
| --- |
| **위험화학품안전법 주요 개정내용** |

2020년 10월 2일 응급관리부는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<중화인민공화국 위험화학품안전법(의견수렴고)>(이하 “**위험화학품안전법**”)를 공시하였다. <위험화학품안전법>은 현재 시행중인 <위험화학품안전관리조례(危险化学品安全管理条例)>(2013년 12월 7일부터 시행)에 기초하여 작성되었고, 많은 부분들이 개정, 개선, 보완되었다.

<위험화학품안전법>의 주요 개정, 개선, 보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.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No** | **분류** | **주요 내용** |
| 1 | 주요 입법 동기 | 1. **특대형 사고로 인한 교훈 섭취**   대련 “7·16”, 청도 “11·22”, 천진항 “8·12”, 강소 향수 “3·21” 등 위험화학품 관련 특대형 사고로 인한 교훈 섭취.   1. **방대한 화학품 산업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**   중국은 글로벌 화학품 제1위의 생산대국이고, 글로벌 화공품 생산능력의 40% 이상을 차지하며, 이는 유럽과 북미 생산능력의 합계에 맞먹음.  중국 내 위험화학품 경영업체가 20여만 개, 화학공업품 생산기업이 9.6만 개, 300여 개의 성급 이상 화학공업구를 보유함.   1. **통일적이고, 규범화한 제도 구축 필요**   다수의 부서가 위험화학품 관련 관리감독 직책을 수행하고 있고, 다수의 법률, 법규가 다양한 각도, 다양한 영역, 다양한 측면에서 위험화학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, 통일적이고 규범화한 제도 구축이 필요함. |
| 2 | 위험화학품 관련 각 부서의 관리 직책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 | 기존 응급관리부서, 공안기관, 환경보호부서, 교통운송주관부서, 위생주관부서, 시장감독관리부서, 우정부서 등의 직책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, **자연자원부, 공업정보화부, 주택건설부, 세관** 등 부서의 관리 직책을 추가함. |
| 3 | 화학공업단지(생산 및 물류)의 규획, 분포와 안전관리 규정 구체화 | * 화학공업단지의 설치는 (i) 안전리스크 평가보고서, 규획환경 영향 평가보고서 및 응급대비책 작성 등 사전 평가 및 준비 작업을 진행해야 하고, (ii) 해당 자료를 국무원 또는 성(省)급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. * 신규 위험화학품 생산 건설 프로젝트는 반드시 화학공업단지에 입주해야 함. * 화학공업단지는 도시구역, 인구밀집장소, 중요 시설, 민감 목표 등과 관련 법률, 행정법규 및 국가 기준에 부합되는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함. |
| 4 | 위험화학품 생산, 저장, 판매, 운송, 연구개발에 대한 안전관리 엄격화 | * 위험화학품 생산, 저장 기업은 안전 리스크 연구 판단 및 안전관리 확약 등을 사회적으로 공시해야 함. * 위험화학품 신생산공정, 신기술 개발을 진행하는 연구개발업체의 안전리스크평가, 연구개발 과정의 안전관리 강화 등의 의무를 명시. * 위험화학품 생산, 저장 기업의 관계자(기업 책임자, 안전생산 책임자, 현장인원 등)의 학력, 자격, 교육 배경, 업무경력 등에 대한 요건 강화. * 위험화학품 생산, 저장 기업의 자동제어시스템과 안전계기시스템 등을 통한 안전 감시, 모니터링 및 조기 경고 구축 및 감독부서와의 시스템 연결 등의 의무 명시. * 위험화학품 운송업체의 운송기사는 일간 연혹 운전시간이 3시간, 야간 연속 운전시간이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. |
| 5 | 위험화학품 사용 관련 안전관리 엄격화 | * 안전관리 전담인원의 화학공업 관련 중급 이상 전문 기술 직함 또는 화학공업 안전분야 공인공정사 자격증 취득 등의 자격 요건 강화. * 위험화학품 사용업체는 소속 종사자에게 작업장소에서 사용하는 위험화학품의 안전기술설명서와 안전 라벨을 제공, 종사자에게 올바른 사용 방법과 비상 상황에서 취해야 할 조치 등의 고지 의무를 명시. * 위험화학품 분실시의 공안기관 적시적 보고의무 명시. |
| 6 | 위험화학품 폐기 관리 엄격화 | * 제8장 ‘페기처분 안전’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위험화학품 폐기처분에 관한 규정 강화. * 주요 내용은 2020년의 <고체폐기물오염환경방치법(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)> 등의 규정에 따라 위험화학품 처분 자격, 직책, 절차,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명시. |
| 7 | 위험화학품 인허가 사항 조정 | * 위험화학품 생산허가증, 경영허가증, 사용허가증 3개 증서를 하나의 증서로 통일. * 위험화학품 건설프로젝트 안전조건 심사와 안전시설 설계 심사를 건설프로젝트 안전심사로 통일. * 위험 정도가 낮거나 생산공정이 단순하며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은 위험화학품 생산기업은 비안제로 조정. |
| 8 |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| * 불법 도구, 설비, 원자재 몰수에 대한 처벌 증가. * 대부분 위반 행위에 대해 기업과 관계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‘쌍벌제(双罚制)’로 규정.   + 기업에 대해 과태료 부과, 생산 정지, 자격 강등, 취소 등 처벌 가능.   + 개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, 행정구류 내지 형사책임 추궁 가능. |